

『2026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』 시행 공고

부산광역시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, 인증서 수여 및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「2026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2일

부 산 광 역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인증기관 : 부산광역시 (주관 : 부산경제진흥원)
- 사업내용 :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각종 혜택 제공
 - 직접지원 : 고용우수기업 인증(인증서, 인증판 수여), 근로환경개선비 지원
 - 간접지원 :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자금지원 우대 등
 - ※ 사안별로 증빙자료 확인 또는 심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
- 인증규모 : 15개사 내외
- 유효기간 :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

2. 인증대상

- 대상업종 : 전 산업분야
- 대상기업
 - 부산시 관내 소재(본사 및 주사업장 모두)한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 (2022.12.31. 이전 사업자 등록)으로,
 - 사업신청 전년도 말('25.12.31.)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그룹별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
- 신청자격
 - **최근 3년간을 비교하여('22. 12. 31.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대비'25. 12. 31.기준 고용보험가입자) 고용보험가입자수의 증가가 아래 그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**

- ▶ 1) 종업원 100인 미만인 기업 :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**10명 이상**
- ▶ 2) 종업원 100인~300인 미만인 기업 :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**15명 이상**
- ▶ 3)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 :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**20명 이상**
- ※ 고용 증가 인원 산정 기준은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기준

※ 동일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대표 법인으로만 신청 가능

3. 제외대상

- 2024년 ~ 2025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 ※ 2023년 이전 인증기업은 신청가능
- 신용평가등급이 '투기적 등급'인 경우 및 신용등급 'D 이하'기업
-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,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
- 동일그룹으로 인수합병 또는 인력이동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
- 공공기관, 고용된 근로자를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인력파견 기업
-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기업
- 기타 사치,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

4.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

| 지원혜택 | 업무소관 |
|--|---|
| ○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| 부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(☎888-4385) |
| ○ 고용우수기업 보조금 지원(인증 당해 연도) - 근로환경개선비 : 기업 당 4,000만원 |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(☎888-6918) |
| ○ 지방세 감면(2026. 12. 31. 까지) - 신규취득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감면 (해당사업 직접사용, 임대용 부동산 제외) ※ 단,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면제된 취득세 추정 | 부산광역시 세정정책담당관(☎888-2124) 해당 구·군청 세무과 (*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 필요) * 근거조항인 「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」 제11조 규정의 2026.12.31. 일몰 도래에 따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연장 추진 예정 |
| ○ 신용보증 수수료 차감(3년) : 산출보증요율에서 0.5% 차감 | 부산신용보증재단 (☎860-6600) ※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지참 및 확인 필요 |
| ○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프로그램* 참여기업 임대료 / 이자 / 사용료 감면 - 기업별 1천만원, 연 최대 2개 기업(1회에 한함) * 자산매입 후 임대(직접)·자산매입 후 임대(신탁)·자산매입 후 임대(유동화) |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(☎051-794-3813) ※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지참 (상세요건은 유선문의) |
| ○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(*별도심의 후 선정) |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(기업지원팀)(☎888-7695) |
|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(3년) - 중소기업 육성·운전자금 대출 지원한도 우대 등 ※ 중소기업자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한함 |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(☎600-1714) |
|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(3년) (*신청 및 별도심사) | 부산광역시 세정운영담당관(☎888-2161) 해당 구·군청 세무과 (*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 필요) |
|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 사회 가산점 부여(3년) |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(☎600-1825) |

※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감면 등은 한시적 지원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조사 및 별도심사 필요에 따라 해당기관(부서)에서 최종 판단

5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6. 2. 12.(목) ~ 2026. 3. 12.(목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부산일자리정보망 온라인신청 *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
 ※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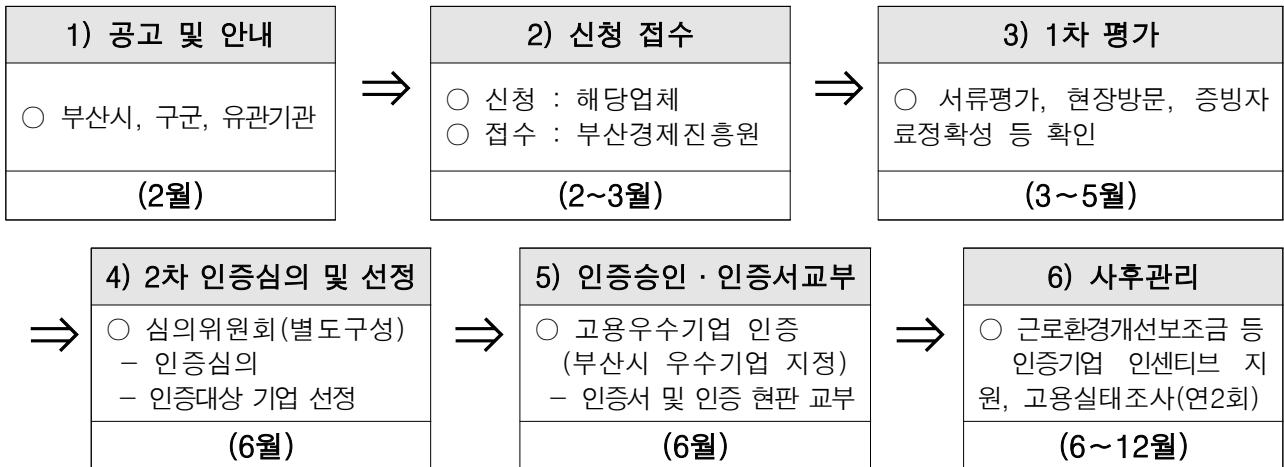
| 단계 | 내용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(홈페이지)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속(www.busanjob.net) | [시스템 문의] 051-888-6903 * 회원가입 및 파일 등록 오류 등 |
| 2 | (회원가입) 기업회원 가입 * 개인회원 아님 주의 | |
| 3 | (메뉴) 참여하기 > JOB 프로그램 | |
| 4 | (신청하기) 2026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신청 게시물 | [사업문의] 051-888-6918 |

- 문의처 :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(051-888-6918)

6. 신청서류 ※ 신청서식 :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(www.busanjob.net) 공지사항 게시

| 연번 | 신청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-----|
| 1 | 【서식 1】 고용우수기업 작성자료(한글파일 작성 후 첨부) | HWP 제출 |
| 2 | 【서식 2】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(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) | PDF 제출 |
| 3 | 사업자등록증 사본 (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 | |
| 4 | 공장등록증(또는 건물등기부등본) 사본 각 1부 | |
| 5 |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| 압축파일 |
| 6 |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`25.4월, `25.12월) 신고용 각 1부 | 압축파일 |
| 7 | 초임임금 관련 내용 명시된 사규 또는 2년 신규 고용보험가입자 전원 근로계약서 | 압축파일 |
| 8 | 기업 신용평가서(공고일 기준 유효) 1부 | |
| 9 | 고용보험가입자명부(`22.12.31, `23.12.31, `24.12.31, `25.12.31) 각 1부 | 압축파일 |
| 10 | 기타 신청서 작성부분관련 실적 증빙자료 일체 (청년고용, 정년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, 취약계층 및 직업계고 채용 실적 관련 증명서에 필요한 각종 증명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말함.) | |
| ※ 신청서류 업로드시 유의사항 - 제출증빙서류의 파일명은 신청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 - 업로드 가능 파일형식 : PDF, HWP, 압축파일, JPG, PNG - 첨부시 첨부항목당 파일 1개만 업로드 가능 (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) | | |

7. 인증절차



8.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

- 평가절차 : 서류평가 → 현장평가(선정기업의 2배수) → 선정심의위원회(최종)
- 선정기준 : 평가점수, 업체규모별 선정수 배정, 부적격사실 여부등을 종합하여 선정

9. 유의사항

- 참가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(온라인)으로만 가능하며 제출기한 엄수
- '제출서류는 '공고문'과 '신청전 필독사항'을 참조하시고, 작성서식은 공고문 게시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제출서류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미제출 처리함(신용등급평가서 유효일, 공공기관제출용 확인 必)
※ 기업 신용등급평가서 신청 및 발급에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 요망
- 현장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서만(선정기업의 2배수) 시행함
- (심사)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
- 신청서나 각종 증명(빙)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
- 기타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(051-888-6918)으로 문의